❷ 한 결 세 무 법 인

수신자 연말정산 담당자님 (근로자만 해당)

제 목 2021년귀속 연말정산신고 안내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금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관련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출기한 : 2022년 2월 10일

◈ 제출서류

- ① 소득공제신고서 근로자 본인 작성 (상단에 연락 가능한 휴대폰번호기재)
 -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 중 당해 근로자본인에 대한 공제분과 표준공제만 공제함.
- ②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자료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사용금액, 개인연금저축 등 <u>항목 모두 조회</u> "조회한 항목 <mark>한번에 PDF로 다운로드</mark>"(암호설정하지말고 회사로 이메일발송)
 - 21년 중도입사자 : 각 항목 조회→ PDF다운로드 →상세(월별)내역 전자문서 내려받기(암호설정X)
- ③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외 서류: 시력보정용 안경구입확인서,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기기 영수증, 국외교육비 증명서류, 취학전아동 교육비납입증명서, 중고생 교복구입증명서, 기부금영수증, 월세액공제 서류(임대차계약서사본-계약서상주소지와 등본상 주소지 같을것) 등
- ④ (전)근무지가 있는 경우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팩스본 가능)
- (5)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부양가족 여부 판단하기 어려울 경우), 장애인증명서

◈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이 맞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맞는자료 사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요건검토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므로, 납세자가 다음 안내문을 참조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합니다.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나 잘못 작성해서 주시면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 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첨부자료 - 근로자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공제내역안내문, 국세청 파일다운로드 방법

한 결 세 무 법 인

담당자 문서번호 2022.01.25.

시행 한결세무법인 부천지사 (2022 01. 25.)

우14539/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275, 404호(중동, 중동프라자) 전화 032-322-7010 / 팩스 032-322-3490 / **t3227010@daum.net** 인적공제 항목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2021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신용)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0-1L 01 LL01		□ 1-1·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5 3.220 5 3.220 5 3220	※ 근로수득자 본의	이이 원하는 경우 매웤 원천장수하는 세액을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병	기본	공제	경로우대	출산입양			5	브험료				의	료비		교.	육비
	내 • 외 국인	주민등록	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자료 구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난임		건	상 장애인 강화 특례자	실손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인적공제 는 인원수	항목에 하 를 전승니!	당하		T			국세청계 기타 계											
	0		-1.					국세청											
	U	(근로자 분	쿠 이)		J			기타											
		(しエハ こ	/					국세청											
		_						기타											
١.								국세청											
잎		_						기타											
인적공제	덕 <u>' 기타 </u>																		
세		신용카드등 사용액																	
및 소득	자료 구분	기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	현금영수증		도서 (총	- 공연등사용 급여 7천만 하자만 기지	원	전통시	장사용	응분	대중교통	통 이용분	기-	 기부금
	국세청 계	3월 4~7월 그 외																	
	기타 계	3월 4~7월 그 외																	
	국세청	3월 4~7월 그 외																	
	기타	3월 4~7월 그 외																	
	국세청	3월 4~7월 그 외																	
	기타	3월 4~7월 그 외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①1)	0	_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①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①3가)	2
(「소득세법」 § 50①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 50①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①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①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①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①3마)	8

-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 3. 연령기준 경로우대:
- . 현성기문 경로우대: (1952. 1. 1.)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아이동 복지원법」에 따른 장애이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 7. 내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021년귀속 연말정산 공제내역 안내문

공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 근로자본인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61.12.31. 이전 출생)	주민등록등본
(본인 . 배우자 .	• 직계비속 .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2001.1.1.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등)	•소득요건 :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합 한 금액을 의미)만 공제대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서/외
추가공제 (경로 • 장애인 • 부녀자 • 한부모)	경로우대자공제 : 만 70세 이상(1951.12.31. 이전 출생) 1인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부녀자공제 :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본인이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 한부모 공제 : 100만원(부녀자 공제와 중복 시 한부모 공제만 적용)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의 :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여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추가공제도 같이 받는다.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사본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연금 :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	
 보험료 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본인 부담액 전액 공제	
주택자금 공제산식:(ⓒ×40%)+⑦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납입액 • 한도 : ○+○ = 300만원 →+○+○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 상환기간 및 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적용 * 구체적인 내용은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참조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2000년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본인명의)액 : 개인연금저축 연간불입액 X 40% (72만원 한도)	저축납입증명서
소기업 · 소상공인	• 해당연도 공제부금 납부액(한도 : 500만원 · 300만원 · 200만원)	
공제부금	•총 급여 7천 이하 법인대표자 가입 및 공제가능(2016년 이후 가입분)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동거입양자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의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형제자매 사용분은 안 됨) - 연령제한은 없음 공제금액: (사용액-총급여액의 25%) X [전통시장,대중교통: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근로자의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30%,신용카드 사용분15%]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공제적용금액에 포함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9.7.1.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 * 공제한도액: 연간 300만원(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연간 2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연간200만원) 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한도추가: 전통시장(100만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100만원)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등 시용금액확인서 현금영수증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공제(한도 : 240만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증명서

OFI	응제구분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제출서류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청년 90%, 청년외 70%)			
외국인 기술자 감면		•외국인 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2년내(50% 세액감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감면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중 기업기여금 부분(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자녀세액공제 (손자녀 적용불가)		• 자녀 1명(15만원), 자녀 2명(30만원), 자녀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 1인당 30만원 • 출생·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자녀세액공제 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인 7세 이상의 자녀(만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주민등록등본 / 기족관계증명서
	계좌 세액공제 율 12%·15%)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한도 400만원*)·퇴직연금계좌 납입액(한도:연금저축액포함 700만원) * 한도 차등적용 : 총급여액 1.2억원,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한도(300만원)	연금납입확인서
	12% · 15%)	• 공제대상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있음)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근로제공기간 납입분만 대상 • 공제금액 : (보험료납입액, 100만원 한도)X12% 또는 15%(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100만원 한도)	보험료 납입증명서
wir so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대상: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소득금액 제한 없음)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경우 * 공제대상의료비 :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구입,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구입(50만원이내), 보청기구입,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산후조리원 비용(출산1회당 200만원 한도, 총급여 7천만원이하자),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분만 대상, (미용. 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공제금액 : [⊙(본인, 65세이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급액 - ⓒ의 의료비 지급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 X 15% (난임시술비는 20%) (ⓒ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지급액 - 총급여액X3%, 700만원 한도)] X 15%	의료비영수증등
세 핵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15%) (학자금대출상 환액포함) 기부금 세액공제	•취학전아동·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체험학습비 30만원까지 포함)	교육비 납입증명서
공 제		•공제대상 : 근로자 및 직계존비속이 기부금을 지급한 경우(정치기부금은 본인명의 만), 소득요건 0, 연령요건 X •공제금액 : ③ 1천만원까지의 공제대상 기부금×15% + 1천만원 초과분 공제대상 기부금×30% *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으로 본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 - 정치자금 : 근로소득금액 전액 /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X 100% - 기정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있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X10%+min(기준소득금액 X20%,종교단체외지정기부금) - 종교단체기부금 없는 경우 : 기준소득금액 X30% * 법정(지정)기부금이 각각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10년 동안 이월하여 공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의 소솔증명서
월서	네액 세액공제	• 공제대상 ① 무주택 세대주 또는 주택자금공제 등을 세대주가 받지 않은 경우 기타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 ②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③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에 대한 월세를 지출한 경우(전입신고가 되있어야 한다.) • 공제율 ①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10%(한도75만원) / ②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12%(한도90 만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등

[주택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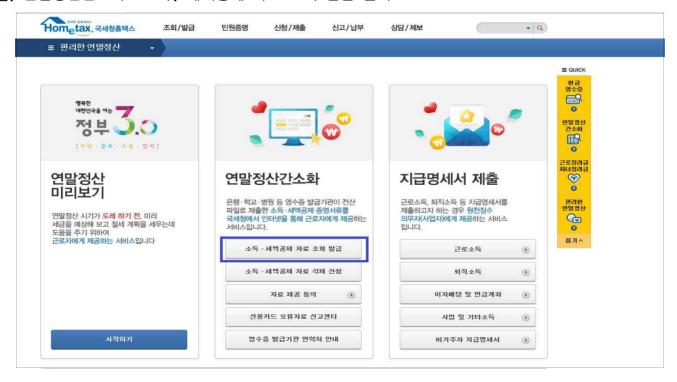
		III OH ¬ TII				
¬ы	그 밖의 소득공제		별소득공제)	세액공제		
구분	주택마련저축납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월세액 세액공제		
		원리금 상환액	이자상환액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 택세대주	-무수택 및 1수택 세내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공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세네 -국민주택규모주택을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세대주로서		
대상	-무주택세대주로서 불입한	그런 그기고 그 그를 -대출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		
410	청약저축 불입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	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상환액	환액 공제	료		
		세대주가 주택관련공제 등을				
חוכו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①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일용근로자 제외)이 계약한 주택에 대해				
기타	가능	②세대주 요건외에 다른 공제				
		③세대원 본인이 실제로 해당	!도 공제 가능			
		<차입금요건>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			
	-청약저축	1)대출기관 차입 시:	-쪼뉴션이션증기필모구디 3 개월 이내 차입금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240만원 이하 납입액)	입주일,전입일(갱신 이주	개월 이대 사립음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총급여 /선만원(홍압소득 금액 6천만원)이하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		
요건	-청약종합저축	포함)중 빠른날 전후 3개월	지 구시기 시승년에 필승년 주택 소유자 일 것			
	(240만원 이하 납입액)	이내 차입		- 그런구락규모 모든 기문자 - 가 3억원 이하		
	-폐지된 근로자주택마련저	2) 거주자 차입 시 : 총급0		-전입신고		
	축(월 15만원 이하) 	입 등으로부터 1월 내에 2.				
		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	↓안 자입금 			
			-규모요건 삭제(`14년부터)			
	 (`09.12.31. 이전 가입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이	-국민주택규모		
대상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 3	 -국민주택규모	하(`19년전 차입금은 기준	-주거용오피스텔포함		
주택	어떤 이하의 주택 소유시는		시가 4억이하)	-주거용 고시원 가능		
' ¬	구인 해하되	1710 7512 70	(`13년전 차입금은 국민주			
			택규모+기준시가3억이하)	공제가능		
			-오피스텔 제외			
공제	납입액의 40%	원리금상환액의 40%	이자상환액	원세애이 10(12)%		
금액			N/10E7	월세액의 10(12)%		
	연간 300년	만원 한도				
공제	연 500만원 한도			75만원		
	(-15년이상+고정금리+비거치	식분할상환 : 1800만원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한도	-15년이상+고정금리or비거치	식분할상환 : 1500만원		90만원)		
	-10년~15년미만+고정금리or비	거치식분할상환 : 300만원)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자기조태지다린아그어지다	7015255H		
		-주민등록표등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	-주민등록표등본		
증명	 	-(거주자차입 시)금전소비	환증명서	-임대치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		
서류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대차계약서 및 계좌이체영	-주민등록표등본 -분양가액확인서류(공시가	-펼세액 시급 등명서뉴(연 - 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증	-문양가역확인서류(공시가 - - - 격 알리미)	급성부능, 계좌이제 성부능 등)		
		빙 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는 공제받는	-무허가주택, 농가주택 포 ₌₁			
주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대주 및 세대원 명의 작	함 -사이요 파메모저 ᄌ태 ㅠ	- 등본주소지와 임대차계약		
구의 사항	(무주택확인서를 은행 등에	성 및 상환 필요	-사업용, 판매목적 주택 포 함	서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 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		
VL SI	익년 2월까지 제출)	-법인, 각종공제회 차입금	^법 -공동소유는 각자 1주택 소	전에 사급한 철체적한 공 제		
		제외	유로 봄(상속 제외)	MI		
			/ 그 미(3기 세되/			

◆ 개인별 공제자료 연말정산 파일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연말정산 클릭



2. 연말정산간소화=>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발급 클릭



3.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내역조회

- 해당년도 근무 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 세액공제 항목별"로 조회 후, 해당 항목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고 항

목별로 세법에 맞게 공제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조회한 항목 한번에 PDF로 다운로드" 버튼 클릭(본인 공제해

당 항목만 조회!)



4.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내역 일괄 내려 받기 항목 선택=>PDF파일 제출=>이름수정불가



주의 : 문서열기암호(비밀번호)설정 체크 반드시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